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단441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순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7. 6. 7.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21,520,1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520,18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5943호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4. 17.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C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9. 5.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C는 2018. 8. 13. 피고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C는 2019. 6. 19. 피고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6.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C는 2019. 6. 21. 사망하였는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D, E가 있었다. 피고는 2019. 9. 19.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D, E는 같은 날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20. 1. 29.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433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상 건설기계임대료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에게 원상회복되어야 하는데,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으므로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1,520,182원(= 원금 13,640,000원 + 원금 13,640,000원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1. 12. 10.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7,880,1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520,1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1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 대하여 원금 13,64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임대료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건설기계임대료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망인의 채무초과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44,875,602원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부산 사상구 F건물 제1층 G호, 제3층 H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44,875,602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가액 44,875,602원은 망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나) 공사대금채권 162,749,344원 및 현금 51,659,745원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머90919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8. 1 18. 망인과 I 사이에 '은 망인에게 2018. 6. 30.까지 194,392,100원을 지급한다. I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그 후 망인이 2019. 6. 21. 인천지방법원 J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51,659,745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그 잔여채권액 162,749,344원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 162,749,344원과 현금 51,659,745원은 망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집행가능성이 전혀 없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공사대금채권이 집행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예금채권 37,008원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K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6,874원, L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7,955원, M조합(송파 N)에 대한 예금채권 3,652원, M조합(O)에 대한 예금채권 105원, P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543원, Q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8,085원, R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98원, S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9,696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위 각 예금채권 합계 37,008원(= 6,874원 + 7,955원 + 3,652원 + 105원 + 543원 + 8,085원 + 98원 + 9,696원)은 망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2) 소극재산

(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1,318,113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71,318,113원 상당의 채무는 망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내역
1	주식회사 T	9,120,060	가압류
2	U은행	13,000,000	근저당권
3	U은행	13,000,000	근저당권
4	삼성세무서		압류
5	P은행	16,000,000	
6	L은행	9,120,000	
7	P은행	1,185,831	
8	근로복지공단	23,000,000	채당금
9	근로복지공단	2,800,000	채당금
10	V 주식회사	4,443,659	
11	W카드	3,060,306	
12	X카드	35,813	
13	X카드	8,279,424	
14	세무법인 Y	3,265,900	기장료
15	주식회사 Z	16,500,000	건설기계임대료
16	AA	2,660,000	임금
17	원고	13,640,000	건설기계임대료
18	삼성세무서	7,600,070	부가가치세
19	삼성세무서	10,300,350	부가가치세
20	삼성세무서	2,906,110	부가가치세
21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58,470	재산세

2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43,220	재산세
23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1,718,800	취득세 등
24	병원	1,000,000	치료비(조혈모, 세포이식비용)
25	병원	7,300,000	치료비
26	병원	1,280,100	치료비
합 계		171,318,113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부산 사상구 F건물 제1층 G호, 제3층 H호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망인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 사상구 F건물 제1층 G호, 제3층 H호와 관련하여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259,321,699원(= 부동산 44,875,602원 + 공사대금채권 162,749,344원 + 현금 51,659,745원 + 예금채권 37,008원)인 반면, 망인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171,318,113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목 록

1. 강원도 평창군 전 2169 평방미터
(소유자 단독소유)
2. 강원도 평창군 전 2950 평방미터
(공유자 공유지분 2분의 1)
3. 강원도 평창군 임야 2275 평방미터
(소유자 단독소유)
4. 강원도 평창군 임야 3437 평방미터
(소유자 단독소유)
5. 강원도 평창군 전 384 평방미터
(소유자 단독소유)

-이상 끝-

